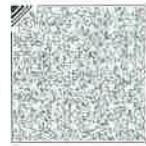




중앙노동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건 처리결과 알림[2018. 2. 5.(월) 결정]

- 관련 : 2018단위1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 신청
-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신청인(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불임과 같이 재심결정서를 송부합니다.
- 노조법 제69조에 따라 관계당사자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심결정서 정본 1부. 끝.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강민주 (우 07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대림동, 삼풍빌딩) 철도회관 4층 법무법인 여는) 귀하, 박기표 (우 46332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37 (금사동) 2층 노무법인 제니스 노무법인 제니스) 귀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우 07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영등포동7가, 우성빌딩) 73 우성빌딩 2층) 귀하

2018. 3.

조사관 과장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8.
박상보 김동욱 정정식 문기섭 박준성

협조자 상임위원 이수영

시행 교섭대표결정과-1467 (2018. 3. 8.)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http://www.nlrc.go.kr>

전화 044-202-8237 전송 044-202-8132 / sigblru@korea.kr / 비공개(6)

공정한 심판, 합리적 조정,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사 건 중앙2018단위1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신청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대림동, 삼풍빌딩) 철누회관

위원장 최춘식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공인노무사 강민주

사 용 자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장 직무대행 최창운

대리인 노무법인 제니스

담당 공인노무사 박기표

결 정 일 2018. 2. 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2. 19. 부산2017단위4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침에 관하여 행한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2. 5. 결정, 2017단위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한다.

이 유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8.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근로하는 의사직종의

근로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베드나무로 73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1998.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성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1. 6. 28.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근로하는 간호직, 보건직, 사무·기술직, 연구직종 등(이하 '간호직종 등'이라 한다) 근로자 3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이하 '신청 외 노조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사용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07. 3. 2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사용하여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공공기관으로서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의학원'이라 한다)은 2010. 7. 16. 개원하였고, 소재지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이고, 상시근로자는 480여 명이고 병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이 사건 의학원의 분사무소 등기는 2012. 4. 18.에 이루어졌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의학원의 교섭단위에서 '의사식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하다'며 2017. 11.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7. 12. 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2. 29.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 4.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중 2명이 주임과장의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소속 직원의 휴가 등 근태관리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 의학원 내 의사식종과 간호식종 등 사이에는 임금체계 등에 구분을 두고 있고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간호직종 등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의사직종 근로자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진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직종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되어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동남권의학원 내 의사직종과 간호직종 등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의학원은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직종 근로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사용자와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신청 외 노조 지부 조합원에 대한 교섭력이 박탈되므로 의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의학원의 의사 59명 중 20여 명은 직책수당을 받는 주임과장 이상의 보직을 갖고 인사평가, 휴가 등의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노조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설령,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학원 내에 의사직종과 간호직종 등 간에는 “임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급여체계는 동일하고, 급여규정 등 각종 규정도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 외 노조 지부 조합

워 뿐 아니라 의사직종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과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이 사건 의학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8호증 노사마루 전산조회 현황]

나. 이 사건 의학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인사·노무, 회계 등이 분리 독립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이 사건 의학원은 별도로 조직된 각 노동조합과 별도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법인 정관과 이 사건 의학원 운영규정 및 이 사건 법인과 의학원이 체결한 단체협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3호증 동남권의학원 단체협약서, 사 제4호증 동남권의학원 임금협약서, 노위 제10호증 의학원 단체협약서, 노위 제11호증 의학원 임금협약서, 노위 제19호증 의학원 정관, 노위 제20호증 의학원 회계관련 자료, 노위 제21호증 동남권의학원 회계 관련 자료]

<이 사건 법인(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 내용 일부 발췌>

<정관>

제3조(소재지) 의학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원,

부설기관, 연리시무 등을 둘 수 있다.

제31조의2(동남권원자력의학원)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학원의 분원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동남권의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농남권의학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 ③ 분원의 조직, 인사,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농남권원자력의학원)의 운영규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 정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분원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 되, 중요한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분원의 장) ① 분원의 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③ 분원의 장은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분원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위임) 분원의 장은 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중요 채무부담 발생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5. 주요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학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제12조(인사관리) ① 분원 소속직원의 임면은 분원의 장이 행한다.

② 분원 소속직원의 인사고في, 승진, 휴직, 선보, 포상, 신계, 휴가, 근로조건 등의 인사와 급여, 퇴직금 등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분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행한다. 다만, 분원의 장이부장급 이상 부서장(단, 병원부문은 병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3조(노무관리) 분원의 장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의학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별도로 편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분원의 장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권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실행예산의 집행은 분원의 장이 행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 분원의 회계 및 결산은 의학원의 회계 및 결산과 별도의 독립회계로 운영하되, 의학원의 본원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

제17조(의료사업) 분원 자체의 진료, 약사 및 간호 등 제반 의료사업에 관한 사항은 분원의 장이 관掌한다.

제20조(인원 등의 활용) ① 분원은 의학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일정 비율의 사용료 또는 간접비용을 분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현황>

구분	이 사건 법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이 사건 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체결일	2017. 9. 29.	2017. 9. 27.
유효기간	2017. 9. 29.~2018. 9. 28.	2017. 9. 27.~2018. 9. 26.
전문내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의료산업관계 사용자는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직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의학원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의학원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체결 당사자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 (사용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 지회장 (시용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장

다. 이 사건 의학원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조 지부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있고,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의견서(사용자)]

< 노동조합 및 임·단협 현황 >

노동조합명 (지부·분회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조 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조 분회)
소재지 (시·군·구)	서울 영등포구 베드나루로 73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부산 기장군 상안읍 좌농길 40)
대표자 (지부·분회)	나순사 (안진희)	박배일 (김재현)
설립일 (지부·분회)	1998. 3. 9. (2011. 6. 28.)	2006. 11. 30. (2017. 9. 8.)
조합원수 (지부·분회)	약 50,000명 (300여 명)	약 180,000명 (10여 명)
임<단>협 유효기간	2017. 1. 1.~12. 31.	없음
소속 연합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라. 이 사건 의학원의 직종별, 고용형태별[정규직, 별정직, 무기계약(별정직)](파견직 제외)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6호증 직종별, 고용 형태별[정규직, 별정직, 무기계약(별정직)](파견직 제외) 근로자 현황]

<직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단위: 명)>

구분1	구분2	직종							총 합계
		의사직	연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정규직	정원	50	24	5	228	57	29	15	408
정규직	정규직(알리오)	47	22	4	198	55	29	15	370
	정규직(수습중)		1	1	9	1			12
	정규직(5개월이상 출산휴가 및 휴직중)				16				16
	소계	47	23	5	223	56	29	15	398
별정직	별정직(정규T/O)				1	1			2
	별정직(T/O)	8	4	3	8	6	4	5	38
	별정직(휴직등대체)				28		1		29
	별정직(T/O)-파트타임	2				2			4
	소계	10	4	3	37	9	5	5	73
무기계약 (별정직)	무기계약				5	5	3	1	14
총 합계		57	27	8	265	70	37	21	485

마. 이 사건 이하원이 재지 근로자 중 신청 외 노조 지부와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하고 있는 직종별 인원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4호증의1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 노위 제5호증 근로조건 및 고
용형태 차이, 노위 제16호증 보건의료노동조합 조합원 현황]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현황>

구분	계	의사직	그 외 직종				
			연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 기술
근로자 수	485명	57명	27명	8명	265명	70명	58명
신청 외 노조 지부	302명	-	1명		227명	47명	27명
이 사건 노조 분회	12명	12명	-	-	-	-	-

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규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다.[사 제3호증 동남권의학원 단체협약서,
노위 제2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노위 제14호증 한국원자력의학원지
부 운영 규정, 노위 제15호증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운영 규정, 노위 제
17호증 보건의료노동조합 규약]

<규약 등 내용 일부 발췌>

구분	규약 등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p><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p> <p>제7조(조합원자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 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및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외 노동조합</p>	<p><보건의료노동조합 규약></p> <p>제7조 【조직대상】 1.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노동자와 아래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자, 사용자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보건의료산업에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 4)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5) 조합은 조합원이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p><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운영 규정></p> <p>제6조(구성) 지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p> <p><동남권의학원 원장과 체결한 단체협약(2017. 9. 27)></p> <p>제6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직책수당을 받은 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 조합가입을 필한 자로 한다.</p> <p>제7조(조합원의 자격) 의학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의학원내의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p>
--	--

사.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7. 7. 28. 이 사건 의학원에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어 2017. 8. 16. 신청 외 노동조합만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의학원은 2017. 9. 27. 유효기간이 2017. 9. 27.~2018. 9.

26.까지 1년의 협약(이하 '201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제3호증 단체협약서, 사 제1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문서]

아. 이 사건 의학원에 근로하는 의사직종 근로자 김재현과 양○○, 최○○, 김○○, 배○○ 등 10여 명은 2017. 9. 8.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입하였고, 이 중 2명은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주임과장으로 소속 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휴가, 휴직 등에 대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다.[초심 이유서(이 사건 노동조합) 및 초심 의견서(사용자), 노위 제4호증 조합원 현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이 사건 노동조합)]

※ 초심자노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직책수당을 받지 않는 조합원 명단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조합원의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자. 이 사건 의학원의 조직은 '2개 사업단 · 5부 · 61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및 사업단'의 직접규정시행요령과 직책수당 지급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의 범위는 직책수당을 받은 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 조합가입을 펼한 자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노위 제8호증 직책수당 지급지침, 노위 제26호증의1 직제규정 시행요령, 노위 제26호증의2 조직도, 사 제3호증 2017년 단체협약]

* (2단) 연구센터 · 병원, (5부) 연구기획관리부 · 진료부 · 의료정책부 · 간호부 · 경영관리부, (61팀) 연구정책기획팀 · 소화기내과 · 의료질관리팀 · 병동간호과 · 인사총무팀 등

<직제규정시행요령 등 주요내용>

<직제규정시행요령>

제3조(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본부 및 사업단 하부에 부(이하 “부급부서”라 한다) 및 팀·과·실·센터(이하 “팀급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 및 사업단의 장은 하부소속의 설치·개폐가 필요할 경우 하부소속 설치·개폐(안)을 입안하여 조직관리 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부서장 등) ① 부급부서에는 부장을 두고, 의사직, 시니어 2급 이상 및 별정직(시니어 2급 이상에 준하는 자) 직원으로 보한다.

② 팀급부서에는 팀장·과장(신규과는 수임과장)·실장·센터장을 두고, 의사직, 주니어 2급 이상 및 별정직(주니어 2급 이상에 준하는 자)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사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팀급부서 하위업무단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사장, 수간호사 및 실장을 둘 수 있다.

1.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에 기사장을 두고, 보건직 직원으로 보한다.

2. 간호부 각 업무단위에 수간호사를 두고 간호직 직원으로 보한다.

3. 암예방건강증진센터에 실장을 두고 간호직 또는 사무직 직원으로 보한다.

⑤ 제4항의 기사장, 수간호사 및 실장은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업무분장 요령에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직책수당 지급지침 별표>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액	비 고
단장급 부서장	900	
부장급 부서장	600	
팀장급 부서장	450	* 팀장, 과장(진료 각 과는 주임과장), 실장, 센터장
수간호사·기사장 건강증진센터 실장	300	

차. 이 사건 의학원이 휴가 등 근태 관리 위임 전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재심 의견서(사용자)]

<「위임전결규정」 별표2 위임전결사항>

구분	식부내 불	원정	전결			비고
			단장급	부장급	팀장급	
'10. 인력개발	휴가, 출장, 시간외근무, 원외 직무교육 참가 등 일반 복무사항					
	- 단장급	○				
	- 부장급		○			
	- 팀장급			○		
	- 일반 직원				○	

카. 이 사건 의학원의 의사직종과 간호직종 등의 근로시간, 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5호 증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현황, 노위 제3호증 2017. 10월 임금대장]

<주요 근로조건 현황>

구분	의사직	간호직종 등				
		연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기술
근로자수	59명	27명	8명	265명	70명	60명
근로형태	통상근무, 응급실은 3일에 1일 근무	통상근무	통상근무, 야간근무	통상근무, 3교대	통상근무, 야간전담	통상근무
일 근로시간	08:30~ 17:30 응급실 : 08:30~ 익일 08:30	08:30~ 17:30 야간전담 : 1일 근무/3일	08:30~ 17:30, 야간전담 : 1일 근무/3일	08:30~17:30, 3교대 : 07:30~ 15:30, 15:00~ 22:30, 22:00~ 08:00	08:30~ 17:30, 야간전담 : 1일 근무/3일	08:30~ 17:30, 야간전담 : 1일 근무/3일
임금제	호봉제					

2017. 10. 17.
- 15 -

월 평균급여	10,47,249원	4,626,660원	5,344,830원	3,742,240원	3,742,240원	3,742,240원
월 기본급	9,263,000원 (의사1호봉)	1,758,250원 (A1 1호봉)	2,842,000원 (J1 1호봉)	4,112,330 (J1 1호봉)	2,535,160 (J1 1호봉)	2,535,160 (J1 1호봉)
증식보조비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연구활동비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임금 각종 수당	기족수당(통), 직책수당(동), 자녀학자 보조비(동), 진료실적급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녀학자보 조비, 연구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녀학자보 조비, 자녀학자보 조비,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녀학자보 조비, 교대근무수 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녀학자보 조비,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녀학자보 조비,
상여금			없음			
맞춤형 복지비			600,000원			
연차수당			법정 연차수당			
퇴직금			법정 퇴직금			
휴일 및 휴가			공휴일, 개원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적용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			

<의사직종과 간호직종 등의 월 통상임금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의사직	사무직 기술직	연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고정급표	40,387 (의사1호봉)	8,059 (A1 1호봉)	12,598 (j1 1호봉)	12,598 (j1 1호봉)	12,598 (j1 1호봉)	12,598 (j1 1호봉)
직무급표	20,356	4,900	8,782	24,026	5,100	5,100
정액급표	34,097	2,015	3,150	3,150	3,150	3,150
차등평가급표	16,316	6,125	9,574	9,574	9,574	9,574
소계	111,156	21,099	34,104	49,348	30,422	30,422
증식보조비	1,320	1,320	1,320	1,320	1,320	1,320
연구활동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계	114,876	24,819	37,824	53,068	34,142	34,142
월 통상임금	9,573	2,068	3,152	4,422	2,845	2,845

<고용 형태 현황>

구분	의사직	간호직종 등				
		연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기술
평균연령	43세	41세	44세	31세	35세	37세
평균근속년 수	5년	5년	2년	4년	5년	6년
담당업무	환자 진료	연구	약 조제	간호	임상 병리사 등 의료기사	행정, 시설관리
자격요건	의사 면허	-	약사면허	간호사 면허	기사면허	-
직급체계	단일 직급	주니어, 시니어, 매니저				
고용형태 별 근로자 수	정규직: 49명, 계약직: 10명	정규직:23명 계약직: 3명	정규직:5명 계약직:3명	정규직:228 명, 계약직:9명	정규직:61명 계약직:9명	정규직:50명 계약직:10명
채용방법	공개채용					
계약기간	계약직은 1년 단위					
복무관리	취업규칙 등					
정년	65세	매니저급 : 61세, 시니어급 이하 : 60세				
직종 간 인사교류	없음					

다. 위 '카'항과 같이 이 사건 의학원의 급여(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급여지급요령'의 '별표2~5의 같이 의사직종 및 간호직종 등 근로자에게 고정급표, 직무급표, 정액급표, 차등평가등급표 등을 합산한 금액 (이하 '통상임금'이라 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통상임금이 된다)과 충식보조비(연 132만원/월 11만원), 연구활동비(연 240만원/월 20만원)이 모두 지급되고,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녀학자보조비 등도 의사직종과 간호직종 등 근로자 구분 없이 가족 수 또는 직책 등의 지급요건에 따라 동일

하게 지급된다. 그리고 의사지급은 '의사지 인센티브 지급 규정'의 진료실적에 따라 2개월 마다 인센티브(이하 '진료실적급'이라 한다)가 별도로 지급되고, 연구직은 연구수당이, 간호직은 교대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지급요령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신정 이유시, 사 제7호 종급여지급 요령, 노위 제31호증 의사직 인센티브 지급 변경]

<급여지급요령 내용 일부 발췌>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정급"이라 함은 직종별 급여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직무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무특성 및 자격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성과급"이라 함은 별도로 정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성과급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차등성과급을 말한다.

제5조(고정급) 고정급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6조(직무급) 직무급은 별표3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고정성과급과 차등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성과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급

2. 속인급

③ 정액급은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④ 속인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수당

2. 직책수당

3. 자녀학자금보조비

4. 당직수당

5. 응급수당 및 응급대기수당

6. 특정직무수당

- ⑤ 속인급은 매월 지급하되 지급사유 변동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한다.
- ⑥ 차등성과급은 차등평가급, 진료성과급, 및 과제인센티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등평가급은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을 직전연도 인사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며, 급여등급 변동시는 급여등급 변동 전후 차등평가급 해당액을 급여등급 적용기간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한다.

2.(이하 생략)

파. 이 사건 의학원에서 응급 진료 또는 응급 근무하는 경우에는 응급수당 및 응급대기수당 등이 별도 지급되고, 응급수당 및 응급대기수당 지급지침, 시간 외 수당 지급대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신청 이유서, 사 제3호증 2017년 단체협약서, 사 제9호증 시간 외 수당 지급지침]

<응급수당 지급지침 주요내용>

<응급수당 및 응급대기수당 지급지침>

제3조(지급금액) ① 응급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직

- 가. 응급진료시 : 50,000원/건
나. 응급수술시 : 100,000원/건
다. 응급혈액투석시 : 100,000원/건

2. 간호직 및 보건직 : 30,000원/건

② 응급대기수당은 10,000원/회를 지급한다.

<단체협약서>

제89조(응급수당 및 응급대기수당) ① 응급수당은 호출에 의해 휴일 및 근무

시간 송별 후 시행된 응급 진료 및 수술에 참여한 다음 기호의 직원에게 지급한다.

1. 의사직

가. 응급진료시 : 50,000원/건

나. 응급수술시 : 100,000원/건

2. 간호직 및 보건직 : 30,000원/건

② 응급대기수당은 응급수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 응급 대기하는 수술실 근무 간호직에게 1회시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호출되어 제1항의 응급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시간 외 수당 지급지침 내용 일부 발췌>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관리자”라 함은 직제규정시행요령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서장 및 제4항의 기사장, 수간호사 및 실장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시간 외 수당은 시간 외 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6호의 관리자

2. 의사직, 전공의 및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직

4. 급여에 시간 외 수당이 포함적으로 포함된 직원

하.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매년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의사직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2011~2017년까지 임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4호증 임금협약서, 노위 제28호증 급여지급요령 개정(안), 노위 제32호증 2011~2016년 임금협약서]

<2011~2017년 임금협약 주요내용>

년도별	임금협약 주요내용																																												
2011년	<p>1.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4.1% 인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급 · 성과급(의사직 제외): 3.27% 인상 ○ 직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직: 3.27% 인상+737,000원 - 연구직 · 간호직 · 사무직 · 기술직 · 약무직: 737,000원 <p>2.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약무직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위 사항을 적용하고 8월 1일부터는 별도 임금인상(안)을 적용한다. <p>3. (이하생략)</p>																																												
2012년	<p>1.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3% 인상한다.</p> <p>2. 의학원은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으로 인한 임금 격차 해소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총액기준 평균 3.5%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 및 직급별 차등지급(평균 3%) - 간호직/보건직/사무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J(5.43%)</th> <th colspan="2">S(2.1%)</th> <th colspan="2">M(0.45%)</th> <th rowspan="2">전체평균</th> </tr> <tr> <th>J1(9등급)</th> <th>J2(15등급)</th> <th>S1(20등급)</th> <th>S2(20등급)</th> <th>M1(20등급)</th> <th>M2(15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6.3</td> <td>4.55</td> <td>3.06</td> <td>1.14</td> <td>0.45</td> <td>-</td> <td>2.66</td> </tr> </tbody> </table> <p>- 연구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J(6.72%)</th> <th colspan="2">S(2.39%)</th> <th colspan="2">M(1.02%)</th> <th rowspan="2">전체평균</th> </tr> <tr> <th>J1(9등급)</th> <th>J2(15등급)</th> <th>S1(20등급)</th> <th>S2(20등급)</th> <th>M1(20등급)</th> <th>M2(15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7.64 (7.51~7.77)</td> <td>5.80 (5.63~6.0)</td> <td>3.28 (3.28~3.29)</td> <td>1.49 (1.4~1.61)</td> <td>1.27 (1.16~1.4)</td> <td>0.77 (0.73~0.85)</td> <td>3.3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종 0.5% 정액 지급 3. 중식보조비를 120,000원/년 추가 지급한다. 4. 2012. 1. 1.부터 적용한다. 	구분	J(5.43%)		S(2.1%)		M(0.45%)		전체평균	J1(9등급)	J2(15등급)	S1(20등급)	S2(20등급)	M1(20등급)	M2(15등급)	비율	6.3	4.55	3.06	1.14	0.45	-	2.66	구분	J(6.72%)		S(2.39%)		M(1.02%)		전체평균	J1(9등급)	J2(15등급)	S1(20등급)	S2(20등급)	M1(20등급)	M2(15등급)	비율	7.64 (7.51~7.77)	5.80 (5.63~6.0)	3.28 (3.28~3.29)	1.49 (1.4~1.61)	1.27 (1.16~1.4)	0.77 (0.73~0.85)	3.38
구분	J(5.43%)		S(2.1%)		M(0.45%)		전체평균																																						
	J1(9등급)	J2(15등급)	S1(20등급)	S2(20등급)	M1(20등급)	M2(15등급)																																							
비율	6.3	4.55	3.06	1.14	0.45	-	2.66																																						
구분	J(6.72%)		S(2.39%)		M(1.02%)		전체평균																																						
	J1(9등급)	J2(15등급)	S1(20등급)	S2(20등급)	M1(20등급)	M2(15등급)																																							
비율	7.64 (7.51~7.77)	5.80 (5.63~6.0)	3.28 (3.28~3.29)	1.49 (1.4~1.61)	1.27 (1.16~1.4)	0.77 (0.73~0.85)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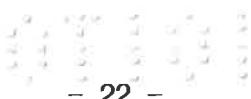
2013년	<p>1.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2.8% 인상한다.</p> <p>2. 의학원은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으로 인한 임금 격차 해소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 600,000원/년 <p>3. 2013. 1. 1.부터 적용한다.</p>
2014년	<p>1.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1.7% 인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률 70%(총액기준 1.2%)(고정급 및 성과급 포함) ○ 정액 30%(총액기준 0.5%)[직무급 (276,000원/년)에 포함] <p>2. 2013. 1. 1.부터 적용한다.</p>
2015년	<p>1. 2015년 경영개선에 따른 수지잉여금 350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 700,000원/년(직무급에 포함) <p>2. 2015. 1. 1.부터 적용한다.</p>
2016년	<p>1.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2.25%를 다음과 같이 시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률 80%(총액기준 1.8%)(고정급 및 성과급 포함) ○ 정액 20%(총액기준 0.45%)(251,000원/년, 직무급에 포함) ○ 2016. 1. 1.부터 적용한다. <p>2. (생략)</p>
2017년	<p>1.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3.5% 인상한다.</p> <p>2. 2017. 1. 1.부터 적용한다.</p>

거. 기획재정부가 이 사건 의학원에 시달한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편성지침은 아래와 같다.[초심 의견서(사용자)]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3. 인건비

(1) 총인건비*



□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 두 총인건비 예산의 3.5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 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 12. 19.과 2018. 2. 5. 초심자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의사직종과 그 외 직종 간에는 임금 체계, 근로시간, 정년 등에 차이가 명확하고, 의사는 근무시간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퇴근하더라도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다시 들어와야 한다.

나) (분회장 김○○) 신청 외 노조 지부가 의사들을 사용자측으로 몰아서 비방하는 등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면, 신청 외 노조 지부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또한 의사가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임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도 해고되었다.

다) 의사직종에 대한 진료권, 고용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섭이 필요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현장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느 직종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기에 교섭단위 분리 자체를 부정적

◦ 루 생각할 수만은 없다.

마) 동남권의학원 의사 중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고, 이 중 2명은 직책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

2) 사용자

가) 신청 외 노조 지부도 의사직의 가입을 막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 시 실무적으로 교섭을 중복으로 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향후에 각 직종별 근로조건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다) 대한항공 등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라서 인건비 총액이 한정되어 있다.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면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인상에서 한정된 파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의사직종의 특수성을 계속 말하고 있으나, 그 것은 병원의 특수성이고 의사직종만 별도의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의사직, 연구직이 같거나 의사직, 약무직이 같거나 직종간 공통된 분모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3) 신청 외 노동조합

가) 의사직종이라 하더라도 난제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나) 2017년 임금인상을 3.5%는 모든 직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 의사직종이 보건의료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이 없다.

라) 의사직종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찾아온 적은 없었다. 의사직종에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 할 수는 있나고 생각한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②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2.12.]

〈노동위원회 규칙〉

제151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2017년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직책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중 조합가입을 필한 자로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초심지노위의 결정 내용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둘째, (적격이 있다

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사시중을 분리함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초심자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윌권이 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자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조합원 중 노조법에 따른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7. 10. 28. 선고 97라9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이’항 내지 ‘치’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분회 조합원 중 일부가 주임과장의 직책으로 직책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사유만으로 노조법에 따른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주임과장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학원에 간호직종 등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직종 근로자 중 직책이 없는 김재현 등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조 분회를 조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의사직종 근로자와 간호직종 등 근로자 간에는 ‘임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급여체계는 동일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체결할 경우 신청 외 노조 지부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된 의사직종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의사시종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의학원은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한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직종 근로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신청 외 노조 지부에 대한 교섭력이 박탈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있어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은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판단

하기 위한 징표적 요소로 보는 것이 더 많았던가로 이과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모두 갖추었을 때만 분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뷔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간호직종 등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징년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간호직종 등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조 지부는 의사직종 근로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뷔리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 근로조건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내지 '하'항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된 간호직종 등 근로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된 의사직종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대부분 주간 근무(간호직은 3교대 근무)이고,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복리후생제도도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의 급여수준을 보면, 간호직 등 근로자 1년차(1호봉)의 월 통상임금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2,068천원, 간호직과 보건직이 2,845천원, 연구직이 3,152천원, 약무직이 4,422천원인 반면, 의사직종 근로자 1년차(1호봉)의 월 통상임금은 9,573천원으로 의사직종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최소 5,151천원에서 최고 7,505천원이 높아 월 통상

입급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입한 의사직종 근로자의 경우 간호직종 등 근로자와 달리 진료실적에 따라 2개월 마다 진료실적급이 별도로 지급된다. 따라서 의사직종과 간호사 등의 직종 사이에 연세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형태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및 '카'항과 같이 간호직종 등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는 복무·관리에 있어 취업규칙 등 놓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정년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정년에 있어 간호직종 등 근로자는 만 60~61세인 반면, 의사직종 근로자는 만 65세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고, 간호직종 등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면허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여 직종 간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직종 근로자와 간호직종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교섭 관행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및 '하'항과 같이 간호직종 등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만 있을 뿐 이 사건 노조 분회가 2017. 9. 8. 조직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의사직종과 간호직종 등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한편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및 '파'항과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은 간호직종 등의 근로자들만 가입되어 있고, 의사직종 근로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의사직종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대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간호직종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의사직종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1) 관련 법리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5. 판단'의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산재·분 비외 같이, 간호직종 등과 의사직종 사이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년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간호직종 등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조 지부는 의사직종 근로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조 분회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의사직종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교섭단위 분리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개정 2011.11. 7, 2012. 9.27, 2013.12.30, 2014.12.30, 2016.1.14, 12.19>

고정급표

(단)

위: 천원)

구분	의사직	연/기 / 익무직 / 각/통직 / 보건직 / 사부직 / 기술직								
		A1	A2	A3	J1	J2	S1	S2	M1	M2
1	40,387	8,059	9,810	11,557	12,598	15,911	19,142	22,212	26,556	30,136
2	41,203	8,350	10,101	11,732	13,044	16,347	19,576	22,776	27,018	30,555
3	42,019	8,641	10,392	11,907	13,490	16,783	20,010	23,340	27,480	30,974
4	42,835	8,932	10,683	12,082	13,936	17,219	20,444	23,904	27,942	31,393
5	43,651	9,223	10,974	12,257	14,382	17,655	20,878	24,468	28,404	31,812
6	44,467	9,514	11,265	12,432	14,828	18,091	21,312	25,032	28,866	32,231
7	45,283	9,805	11,556	12,724	15,274	18,527	21,746	25,596	29,328	32,650
8	46,099	10,096	11,847	13,015	15,720	18,963	22,180	26,160	29,790	33,069
9	46,915	10,387	12,138	13,306	16,166	19,399	22,614	26,724	30,252	33,488
10	47,731	10,678	12,429	13,597	16,166	19,835	23,048	27,288	30,714	33,907
11	48,547	10,969	12,720	13,888	16,166	20,271	23,482	27,852	31,176	34,326
12	49,363	11,260	13,011	14,179	16,166	20,707	23,916	28,416	31,638	34,745
13	50,179	11,551	13,302	14,470	16,166	21,143	24,350	28,980	32,100	35,164
14	50,995	11,842	13,593	14,761	16,166	21,579	24,784	29,544	32,562	35,583
15	51,811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5,218	30,108	33,024	36,002
16	52,627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5,652	30,672	33,486	36,002
17	53,443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6,086	31,236	33,948	36,002
18	54,259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6,520	31,800	34,410	36,002
19	55,075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6,954	32,364	34,872	36,002
20	55,891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7,388	32,928	35,334	36,002
21	56,454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7,388	32,928	35,334	36,002
22	57,017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7,388	32,928	35,334	36,002
23	57,580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7,388	32,928	35,334	36,002
24	58,143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7,388	32,928	35,334	36,002
25	58,706	12,133	13,884	15,052	16,166	22,015	27,388	32,928	35,334	36,002
26	59,269									
27	59,832									
28	60,395									
29	60,958									
30	61,521									
31	62,084									
32	62,647									
33	63,210									
34	63,773									
35	64,336									
36	64,899									
37	65,462									
38	65,462									
39	65,462									
40	65,462									

별표 2 <개정 2011.11.7, 2012.9.27, 2013.12.30, 2014.12.30, 2016.1.14, 12.19>

직무급표

{단위 : 천원}

구분 의사직	A1 수무직/기술직 연구직	A2 A3 연구직 야무직	J1 연구직 야무직	J2 연구직 야무직	S1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S2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M1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M2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A1 A2 A3 연구직 야무직			J1 연구직 야무직			S1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M1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A1 A2 A3 연구직 야무직			J1 연구직 야무직			S1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M1 사무/기술 간호/보 연 구직 야무직			
1	20,356	4,900	4,900	8,782	24,026	5,100	8,782	25,151	5,700	11,579	24,476	6,400	11,579	24,269	7,400	11,770	21,704
2	20,356	4,900	4,900	8,782	23,957	5,100	8,782	25,095	5,700	11,579	24,431	6,400	11,579	24,230	7,400	11,770	21,704
3	20,356	4,900	4,900	8,782	23,888	5,100	8,782	25,042	5,700	11,579	24,381	6,400	11,579	24,191	7,400	11,770	21,460
4	20,356	4,900	4,900	8,782	23,818	5,100	8,782	24,986	5,700	11,579	24,334	6,400	11,579	24,153	7,400	11,770	21,459
5	24,999	4,900	4,900	8,782	23,749	5,100	8,782	24,931	5,700	11,579	24,287	6,400	11,579	24,113	7,400	11,770	21,704
6	24,999	4,900	4,900	8,782	23,680	5,100	8,782	24,877	5,700	11,579	24,239	6,400	11,579	24,073	7,400	11,770	21,457
7	24,999	4,900	4,900	8,782	23,613	5,100	8,782	24,821	5,700	11,579	24,193	6,400	11,579	24,035	7,400	11,770	21,454
8	24,999	4,900	4,900	8,782	23,541	5,100	8,782	24,767	5,700	11,579	24,146	6,400	11,579	23,995	7,400	11,770	21,453
9	24,999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709	5,700	11,579	24,099	6,400	11,579	23,956	7,400	11,770	21,450
10	30,852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655	5,700	11,579	24,051	6,400	11,579	23,915	7,400	11,770	21,451
11	30,852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598	5,700	11,579	24,005	6,400	11,579	23,875	7,400	11,770	21,449
12	30,852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544	5,700	11,579	24,045	6,400	11,579	23,836	7,400	11,770	21,444
13	36,552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489	5,700	11,579	23,912	6,400	11,579	23,796	7,400	11,770	21,442
14	36,552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433	5,700	11,579	23,862	6,400	11,579	23,756	7,400	11,770	21,443
15	36,701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3,817	5,700	11,579	23,817	6,400	11,579	23,718	7,400	11,770	21,441
16	36,701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770	6,400	11,579	23,680	7,400	11,770	21,440
17	36,701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30	5,700	11,579	23,723	6,400	11,579	23,639	7,400	11,770	21,436
-8	36,701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675	6,400	11,579	23,600	7,400	11,770	21,436
-9	36,701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627	6,400	11,579	23,562	7,400	11,770	21,434
-20	36,701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579	6,400	11,579	23,523	7,400	11,770	21,434
21	40,297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579	6,400	11,579	23,523	7,400	11,770	21,434
22	40,297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579	6,400	11,579	23,523	7,400	11,770	21,434
23	40,297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579	6,400	11,579	23,523	7,400	11,770	21,434
24	40,297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579	6,400	11,579	23,523	7,400	11,770	21,434
25	40,297	4,900	4,900	8,782	23,473	5,100	8,782	24,380	5,700	11,579	23,579	6,400	11,579	23,523	7,400	11,770	21,434
26	42,886																
27	42,886																
28	42,886																
29	42,886																
30	42,886																
31	42,886																
32	42,886																
33	42,886																
34	42,886																
35	42,886																
36	42,886																
37	42,886																
38	42,886																
39	42,886																
40	42,886																

정액급표

(단위 : 천원)

구분	외사직	연구직 / 약무직 / 간호직 / 보건직 / 사무직 / 기술직								
		A1	A2	A3	J1	J2	S1	S2	M1	M2
1	34,097	2,015	2,453	2,889	3,150	3,978	4,786	5,553	6,639	7,534
2	34,301	2,088	2,525	2,933	3,261	4,087	4,894	5,694	6,755	7,639
3	34,505	2,160	2,598	2,977	3,373	4,196	5,003	5,835	6,870	7,744
4	34,709	2,233	2,671	3,021	3,484	4,305	5,111	5,976	6,986	7,848
5	34,913	2,306	2,744	3,064	3,596	4,414	5,220	6,117	7,101	7,953
6	35,117	2,379	2,816	3,108	3,707	4,523	5,328	6,258	7,217	8,058
7	35,321	2,451	2,889	3,181	3,819	4,632	5,437	6,399	7,332	8,163
8	35,525	2,524	2,962	3,254	3,930	4,741	5,545	6,540	7,448	8,267
9	35,729	2,597	3,035	3,327	4,042	4,850	5,654	6,681	7,563	8,372
10	35,933	2,670	3,107	3,399	4,042	4,959	5,762	6,822	7,679	8,477
11	36,137	2,742	3,180	3,472	4,042	5,068	5,871	6,963	7,794	8,582
12	36,341	2,815	3,253	3,545	4,042	5,177	5,979	7,104	7,910	8,686
13	36,545	2,888	3,326	3,618	4,042	5,286	6,088	7,245	8,025	8,791
14	36,749	2,961	3,398	3,690	4,042	5,395	6,196	7,386	8,141	8,896
15	36,953	3,033	3,471	3,763	4,042	5,504	6,305	7,527	8,256	9,001
16	37,157	3,033	3,471	3,763	4,042	5,504	6,413	7,668	8,372	9,001
17	37,361	3,033	3,471	3,763	4,042	5,504	6,522	7,809	8,487	9,001
18	37,565	3,033	3,471	3,763	4,042	5,504	6,630	7,950	8,603	9,001
19	37,769	3,033	3,471	3,763	4,042	5,504	6,739	8,091	8,718	9,001
20	37,973	3,033	3,471	3,763	4,042	5,504	6,847	8,232	8,834	9,001
21	38,114	3,033	3,471	3,763	4,042	5,504	6,847	8,232	8,834	9,001
22	38,254	3,033	3,471	3,763	4,042	5,504	6,847	8,232	8,834	9,001
23	38,395	3,033	3,471	3,763	4,042	5,504	6,847	8,232	8,834	9,001
24	38,536	3,033	3,471	3,763	4,042	5,504	6,847	8,232	8,834	9,001
25	38,677	3,033	3,471	3,763	4,042	5,504	6,847	8,232	8,834	9,001
26	38,817									
27	38,958									
28	39,099									
29	39,240									
30	39,380									
31	39,521									
32	39,662									
33	39,803									
34	39,943									
35	40,084									
36	40,225									
37	40,366									
38	40,366									
39	40,366									
40	40,366									

차등평가급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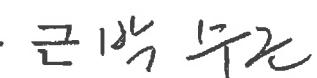
부분	회사명	연고지 / 악무지 / 지총지 / 비간지 / 사무지 / 시설지								
		A1	A2	A3	J1	J2	S1	S2	M1	M2
1	16,316	6,125	7,456	8,783	9,574	12,092	14,548	16,881	20,183	22,903
2	16,646	6,346	7,677	8,916	9,913	12,424	14,878	17,310	20,534	23,222
3	16,976	6,567	7,898	9,049	10,252	12,755	15,208	17,738	20,885	23,540
4	17,305	6,788	8,119	9,182	10,591	13,086	15,537	18,167	21,236	23,859
5	17,635	7,009	8,340	9,315	10,930	13,418	15,867	18,596	21,587	24,177
6	17,965	7,231	8,561	9,448	11,269	13,749	16,197	19,024	21,938	24,496
7	18,294	7,452	8,783	9,670	11,608	14,081	16,527	19,453	22,289	24,814
8	18,624	7,673	9,004	9,891	11,947	14,412	16,857	19,882	22,640	25,132
9	18,954	7,894	9,225	10,113	12,286	14,743	17,187	20,310	22,992	25,451
10	19,283	8,115	9,446	10,334	12,286	15,075	17,516	20,739	23,343	25,769
11	19,613	8,336	9,667	10,555	12,286	15,406	17,846	21,168	23,694	26,088
12	19,943	8,558	9,888	10,776	12,286	15,737	18,176	21,596	24,045	26,406
13	20,272	8,779	10,110	10,997	12,286	16,069	18,506	22,025	24,396	26,725
14	20,602	9,000	10,331	11,218	12,286	16,400	18,836	22,453	24,747	27,043
15	20,932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19,166	22,882	25,098	27,362
16	21,261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19,496	23,311	25,449	27,362
17	21,591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19,825	23,739	25,800	27,362
18	21,921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155	24,168	26,152	27,362
19	22,250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485	24,597	26,503	27,362
20	22,580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815	25,025	26,854	27,362
21	22,807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815	25,025	26,854	27,362
22	23,035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815	25,025	26,854	27,362
23	23,262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815	25,025	26,854	27,362
24	23,490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815	25,025	26,854	27,362
25	23,717	9,221	10,552	11,440	12,286	16,731	20,815	25,025	26,854	27,362
26	23,945									
27	24,172									
28	24,400									
29	24,627									
30	24,854									
31	25,082									
32	25,309									
33	25,537									
34	25,764									
35	25,992									
36	26,219									
37	26,447									
38	26,447									
39	26,447									
40	26,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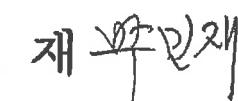
중앙2018단위1 한국원자력의학회(동남권원자력의학회) 교섭단위 분과
결정 재심신청

2018. 2. 5.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의위원 박 수근 

공의위원 박 민재 

공의위원 이 인석 

2018년 3월 8일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이 는 정 본 임

2018년 3월 8일

행정사무관 장 경 윤

